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죄 신설〉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4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에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죄를 신설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의2 신설), 같은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4. (생략)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u>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u>	제2조(정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까지의 죄,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 -----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제12조의2의 범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조제1항¹⁾은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성적목적주거침입죄를 신설하여 이를 「형법」상 주거침입죄보다 가중처벌하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주거의 평온 및 안전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대법원은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로 판시하였음.²⁾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강간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 등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피고인이 강간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³⁾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됨.

○ 개정안은 강간 등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①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②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갔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퇴거불응)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⁴⁾보다 벌금(500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을 상향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 등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 및 재범 우려 등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감 등을 경험하게 하여 단순 주거침입 보다 행위의 불법성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 상

3)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4)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 제12조⁵⁾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어도 다중이용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화⁶⁾된 점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 등의 행위도 주거의 평온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같이 이를 별도의 죄로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성적목적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은 가중처벌됨과 동시에 개정안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신설은 그 예방과 재범 억제 및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성적목적주거침입죄는 동 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증명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일부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광주지방법원 2022.6.9. 선고 2021구합13322 판결

- 먼저, 범죄 구성요건의 증명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적목적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⁷⁾임.
- 목적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 외에 제13조⁸⁾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⁹⁾
- 성적목적주거침입죄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7) 제주지방법원 2022.9.7. 선고 2020고단2988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주거 등에 침입할 당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대법원이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면의 목적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¹⁰⁾
- 강간죄와 같이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통하여 목적과 의도를 추단할 수 있으나,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주거 등의 침입행위만을 토대로 성적 목적과 의도를 추단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침입행위 당시 행위자의 내면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성적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함.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의 증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¹¹⁾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¹²⁾

1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중이용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것이어서”(광주지방법원 2022.6.9. 선고 2021구합13322 판결)

11)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12)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이에 입각하여 검사가 증거를 수사하고 사실심 법원이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인식한 내용과 조사한 증거를 모두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목적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고 사실심 법원도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바, 검사가 피고인의 내면의 목적과 의도를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 명백하기 입증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 등의 침입행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적 목적 외에 살인, 절도와 같은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음.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제342조(미수범)¹³⁾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와 그 미수범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

13)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의 경우 정상참작감경 등을 통해 기수범보다는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 미수범에 대한 법정형은 개정안에 따른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법정형보다 높을 수 있음.

- 이에 행위자의 구체적인 고의를 명백하게 추단하게 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목적이 아닌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행위자는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야간주거침입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처벌 수준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신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성적목적주거침입죄의 신설은 가중처벌의 필요성 및 동 범죄의 예방과 재범 억제 실익,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의 내면의 목적의 증명 가능성 및 범죄 신설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